

[일련번호 : 29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병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동  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■■■동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등에 따라 병가 신청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5(병가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안부예규 제293호)에 따르면,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동은 아래 표와 같이 6일 이상 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가 미첨부 되었음에도 병가를 승인·사용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병가사용 부적정 내역 - 세부내역 별도통보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##### ■■■■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병가 사용 신청 및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